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단공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추가〉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60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중 하나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1의3. (생략) <u><신설></u>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의21(사업) ① ----- ----- -----. 1. ~ 11의3. (현행과 같음) <u>11의4.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u>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부터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촉진사업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¹⁾하고,

1) ('19년 지정) 창원, 반월시화, 인천남동, 구미
('21년 지정) 울산미포, 군산, 명지녹산
('23년 지정) 광양, 주안부평, 신평장림

('20년 지정) 대구성서, 광주첨단, 여수
('22년 지정) 청주, 천안, 대불, 대전, 포항
('24년 지정)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 사업(참고1 참조)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역사업인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장비와 ESS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산업단지²⁾의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 제45조의21에 따른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만 포함하고 있음.

[표 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 ³⁾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위탁받을 수 있고, 현재 모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그 외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은 관리권자(시·도지사 등)로부터 사업권한을 위탁받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을 추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근거를 안정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최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예정법률⁴⁾⁵⁾에 따라 한국산업단

3)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4)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5) 시행예정법률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지공단은 관리대상인 산업단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촉진사업을 수행할 근거조문이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명시되는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시행예정인 기개정 법체계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6

수행할 수 있다.

참고 1

산업단지 · 공장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기후대응기금,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분	내역사업(단위: 백만원)			합계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¹⁾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²⁾	산단 특화 탄소 저감 ³⁾	
'22년	23,000	20,000	-	43,000
'23년	21,000	38,000	2,400	61,400
'24년	22,000	84,000	3,500	109,500

- 1) 산업단지 에너지 데이터 연결·공유를 통해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FEMS를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도입
- 2)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재생 분산에너지원을 구축**하고 에너지 수요-공급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기업의 RE100 인증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 3) 산단별 입주규모, 주요업종,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특성에 적합한 탄소저감 지원 추진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구분	내역사업(단위: 백만원)				합계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사후관리 등	
'22년	65,000	78,540	175,695	2,200	321,435
'23년	48,939	61,174	134,582	2,305	247,000
'24년	27,937	36,646	99,264	3,642	167,489

* 상가, 공장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비 보급을 위한 설치비 보조사업